

-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-

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의안 번호	1582
----------	------

발의일시: 2013.11.15.
발의자: 충주시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한 충주시가 여론조사를 객관적인 방법이 아닌 찬성표를 유도하여 방송에 유포한 이유와 중립을 지켜야할 충주시 공무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불법 여부를 밝히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성인원 : 7명(명단 별첨)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
-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

4. 사전예고결과 : “해당없음”